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2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도 없으며 특수한 손해를 그대로 묵과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그가 택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일단 평등한 자유와 더불어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를 확립해줄 원칙에서부터 시작한다. (최초의 기준점)

3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과 조직 및 기술의 제반 요구사항 때문에 소득과 부의 불평등, 권위와 책임의 차등이, 최초의 평등이라는 기준점(benchmark)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도록 작용한다면 왜 이런 불평등과 차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한에서 평등이라는 기준점에서 한계적으로 떨어져 불평등을 허용해 나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거부권을 가진다. 즉, 누구나 자신의 기대치가 평등 기준점에서의 기대치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방향이라면 불평등을 허용하게 되는데,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적은 이익을 얻게 되는 최소수혜자가 어느 한계를 불평등이 넘어섬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 최소수혜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4 이제 이와 같은 추론을 거쳐 당사자들은 축차적 순서로 된 정의의 두 원칙에 도달할 것이다. 두 원칙 간의 서열을 여기서 정당화하려고는 하지 않겠지만(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교환되어서는 안되는 우선성을 가진다-우선성 논증은 39절, 82절에서 나온다), 다음의 언급은 직관적인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① 자신들을 궁극적인 목적과 이해 관심을 가진 자유로운 인격체로 간주한다. 종교적인 이해관심은 잘 알려진 예이고, 인격적 온전성 integrity도 다른 예다. 이 이해관심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르나 이런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해 보장된다. 당사자들은 이런 고차적인 이해관심을 확고히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2원칙보다 제1원칙을 우선시한다. 자유로운 인격이란 스스로를 자신들의 최종 목적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에 일차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래서 완전히 고정된 선의 관점에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조건은 스스로를 일종의 그 선을 담은 그릇 container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견지하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해관심과 상치된다.)

5 자유의 우선성은,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라도,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은 혹은 불평등한 자유가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를 금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정부의 효율적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적 향상을 꾀하는 것).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자유가 완전히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도록 문명의 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즉, 혁명의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6 문제는 우리가 두 원칙에 대해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인 논증을 하는가이다. A전략은 사회 정책에 대한 그러한 원칙의 의미를 주목하고, 그 두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제2부에서 다룬다). B전략은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

서 보아 두 원칙에 결정적으로 유력한 논증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원칙을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한 최소 극대화의 해결책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발견의 방법으로 쓸모가 있다. 그 두 원칙(a)과 불확실한 상태에서 선택을 위한 최소 극대화 규칙maximize rule(최소 중의 최대)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만약 원초적 입장의 성격상 이러한 최소 극대화 규칙에 표현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논증이 확실히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은 입장의 당사자들의 심리적 속성이 위협기피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추론의 규칙이 집약된 선택 상황의 성격 자체가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끔한다는 뜻이다)

7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규칙(최소극대화)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갖는 세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① 그 규칙은 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확률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 규칙은 확률과 보상을 곱해서 기댓값이 가장 큰 선택지를 채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 ② 최소 극대화의 규칙을 암시하는 두 번째 특징은, 선택하는 사람은 그 규칙에 따름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 이상으로 얻게 될 이득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연히 보다 큰 이득을 갖게 될지도 모르나 그의 소중한 많은 것을 잃게 될 모험을 택하는 것은 그에게 무가치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일한 재화에 대한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자유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이익을 교환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된다.) ③ 제외된 다른 대안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모험을 내포하고 있다.

9 세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고서 원초적 입장의 성격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징 ①: 무지의 베일에 의해 확률에 대한 모든 지식은 배제된다. 따라서 그들은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회의 가능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여러 상황의 가능성과 확률, 구체적인 모습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어져 있다, 내가 노동자로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의미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10 특징② : 만일 이들 원칙이 사회 정의에 대한 쓸 만한 이론을 제시하며 효율성의 합당한 요구와도 양립한다면, 이러한 정의관은 최소한의 만족을 보장하게 된다. 즉, 깊이 생각해 봐서 달리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차등의 원칙은 평등한 기준점에 비해 조정할 것을 다 조정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식의 생각은 자유의 우선성과 두 원칙의 독자적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결정적으로 유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선성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한 자유를 희생하여 보다 큰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11 ③ 특징3: 공리 원칙은 보다 큰 사회적 이득을 위해 노예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상당한 정도의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때때로 주장되어 왔다. 만일 최소한의 만족을 보장하는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손쉬운 대안을 갖고서도 그러한 결과마저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된다.

12 이제 차등의 원칙에 대한 가능한 중대한 반론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최소 수혜자의 전망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보다 유리한 사람의 기대치에 있어 보다 큰 증감이 정의로운지 여부가 불리한 사람의 기대치에 있어서 사소한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처지가 보다 나은 사람의 기대치가 100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의 정의 여부가 최소 수혜자의 전망에 있어 1페니가 증가하는 데 좌우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된다.

13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추상적 가능성에 적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회 정의 문제는 금전이나 재산 등 여러 가지 양을 일정한 개인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내용물에 대한 기대치가 대표적인 사람들 사이에 각양각색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의 반론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원칙이란 (임의의 재화에 대한 분배 원칙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의관으로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등한 자유와 개방된 직위의 원칙들은 이러한 우연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준다. (예를 들어 100억을 벌 수 있는 직위가 기본구조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개방되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위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함으로써 100억을 버는 일은 없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직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닫혀 있거나 본질적으로 공직과 유사한 것이어서 집단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차등 원칙의 실제 적용은 저런 생뚱맞은 사례가 아니라, 보다 유리한 사람들이 정당한 기대치 증가를 위해서는 숙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직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단지 아무런 대가 없이 100억을 그냥 얻고 옛날 1원 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교육받은 인재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점차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그들이 평등하게 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게 된다.

14 또한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란 어떤 사회 제도론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5장에서 자세히 논의). 그것은 경쟁적인 경제 체제 아래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지배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근거해 있다.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동기의 법칙들을 가정할 때 커다란 불균형이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그에 비추어 원칙들을 선택하게 된다.

15 선택의 문제는 대안들이 자연 법칙이나 다른 조건들에 의해 적절히 제한되고 결정자가 이미 그것들에 대한 어떤 선택 경향을 가질 경우에 제대로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옳고 적절히 일반적이라면 이런 사실과 사회 제도를 전제로 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요인이 없다면 선택이라는 관념은 핵심도 없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16 이상의 이야기로부터 분명한 사실은 정의의 제1원칙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조건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반적 사실로부터의 논증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는 것이 공리주의의 특징이다.(공리의 계산 원칙 이외에는 모두 사실조사의 문제이며 공리의 계산 원칙이라는 제1전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사실상 도덕 추론은 끝이 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의의 이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그 제1원칙 속에 구체화하고 있다. 이 정의관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판단들에 합치하기

위해 일반적 사실에 보다 적게 의존하고 있다.

17 모든 이상을 제1원칙 속에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공리주의에 비해 갖춘 장점) ① 가장 분명한 것은 원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공리주의의 표준적 가정이 단지 확률적으로만 참일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의심스럽게 참일 수 있다. 그들의 충분한 의미와 적용은 지극히 가상적일 수가 있다. 효용의 원칙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반적 가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된다.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정들에 의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통계적 계산에 자신들을 내맡기기보다는 곧바로 자신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사자들이 고차적인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았을 때 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우연한 상황과 복잡한 계산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결론에 의해 겨우 간접적으로 뒷받침되는 공리주의를 제1원칙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4절 참조). ② 효용에 대한 이론상의 계산이 언제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고 해도 당사자들은 사정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로 공표하는 것이 실질적인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표준적인 공리주의적 가정이 사실일지라도 집단적 공표가 갖는 이점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제1원칙을 선호한다.

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1 이제 평균 효용의 원칙에 유리한 추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고전적 공리주의 원칙은 사회의 성원 수가 2배가 되면 효용도 2배로 커진다. 반면에 평균 효용은 그렇지 않아서 보다 현대적인 입장으로 생각된다. 즉 2배가 된 사람수로 2배가 된 효용을 나누게 되므로 그대로다.

3 효용에 관한 이들 원칙 중 어느 것이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것인가? 고전적 원칙에 따르면 개인들의 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평균 효용이 아주 서서히 감소한다면, 그 평균 효용이 아무리 저하된다 할지라도 인구는 무한히 증가하도록 권장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총 효용이 감소될 정도로 평균효용이 줄지만 않으면 언제나 인구는 늘어나는 것을 권한다.)

5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평균적인 복지를 유지해줄 어떤 하한선에 합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이지 어떤 총 효용이라는 물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개 중 하나라면 고전적 원칙이 아니라 평균적 원칙이다.

6 이제 당사자들이 평균적 원칙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해보기로 하자.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성원들은 모두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이러한 선호는 기수적 효용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보자. 나아가 각 사회도 자원과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있어 동일하다. 다만 각 사회는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생산을 저하시키게 되는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 소속되기를 결심할 것인가? 만일 자신의 능력과 이해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다면 그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합

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7 그러한 경우를 점차 변경시켜 원초적 입장의 경우와 유사하도록 접근해보자. 그래서 여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해보자. 만일 그의 선호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의 기대 복지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결정을 할 수 있다. 그의 기대치는 각 지위에 대표적인 개인들의 가중된 효용총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최고의 기대치를 주는 사회를 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알고 있는 재능의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8 여기서 다시 몇 가지 변경을 가하면 원초적 입장에 보다 가까운 상황이 나타난다. 가정상의 가담자가 각 사회에서 그가 갖게 될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어떤 개인이든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확률적인 방식에 따라 계속 추리해간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그의 기대치는 각 사회에 있어서 평균 효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변경은 기대 이익을 평균 복지의 수준과 동일하게 해준다.

9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동일한 선호를 가진다고 가정해왔다. 그들의 가치관은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단 이와 같이 지극히 제한된 가정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최초의 상황에 대한 한 형태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회의 성원이나 결정자의 특정 선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제 무지의 베일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정상의 참여자는 이전과 똑같이 추리한다. 그는 자신이 결국 어떤 선호, 능력,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갖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한다.(평균 효용의 원칙에 숨겨진 확률 명제!)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될 동등한 기회를 가진 우리의 기대치는 역시 총 효용을 사람수와 나눈 평균 효용과 동일해진다.

10 그래서 효용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 문제를 잠시 덮어두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모험을 싫어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헤아림에 있어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principle of insufficient reason)(사전에 이루어지는 확률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따르는 합리적인 개인들이라고 생각할 경우 최초의 상황이라는 관념은 평균적 원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평균 효용의 원칙은 고전적 견해와 같은 목적론이 아니며 계약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11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수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이런 효용 관념은 최근 몇 십년 간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대체로 폐기되고 있으며 효용은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 경제 주체의 선택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주요한 기수적 효용은 노이만-모르겐슈테른 정식화에 유래한 것인데, 이것은 위험과 관련된 전망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척도를 이용하여 평균 효용을 정식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우리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혹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당사자들이 노이만-모르겐슈테른 효용함수를 갖는다는 점과 그에 따라 자신들의 전망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다. 물론 이러한 효용 함수가 모든 종류의 고려 사항들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는 반영되어야 한다.

12 하지만 이런 제한 사항들이 지켜질 경우, 평균 공리주의적 입장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수준의 위험 기피 성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험 기피 성향이 크면 클수록, 적어도 경제적 이익에 대한 평가가 의문시 될 때에는, 차등의 원칙과 더욱 유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원초적 입장에서 내리는 결정의 상당한 위험 부담이 충분히 인식되면, 합당한 위험 회피의 정도가 매우 커져서, 공리주의적인 계산 방식은, 실제적인 목적상 차등의 원칙이 갖는 단순성이 선호에 있어 결정적인 것이 됨으로써(49절) 차등의 원칙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이다.